

신규교원임용세칙

제 1조(목적) 이 세칙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응시자격) ① 사립학교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②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강의전담교원 및 산학협력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으로 한다.

③ 예·체능계 및 특정분야(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다.

④ 특별채용 교원의 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3조(채용절차) ①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각 학장에게 의뢰하여 단과대학별 교수초빙계획(안)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의 조정을 거쳐 신입교원 채용계획(안)을 수립한다.

② 세부전공 분야는 단과대학별 교수초빙계획(안)에 의거 총장이 결정한다.

③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며 특별채용은 전임교원 특별채용 임용규정에 따른다.

④ 신규 공개채용은 15일 이상의 일간신문의 공고 또는 인터넷공고를 통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조(신규임용 직위) 공개채용으로 신규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직위는 상위직 임용을 제한하며, 조교수로 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인사위원회에서 상위직위 임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총장결재 및 법인제청을 통하여 상위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다.

제 5조(신규임용조건) ① 신규임용으로 선발된 자는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은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.

제 6조(제출서류)

1. 교원임용지원서(본교 소정양식) 2부

2. 교육 및 연구계획서 2부

3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및 성적증명서(평점평균 기재) 각 1부

4. 연구실적 목록(제목, 연구자, 발표년월일, 발표지, 발표내용 기재) 2부

5. 임용년도 기준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(박사학위논문포함) 200%이상 1부.

단, 학사 또는 석사학위 지원자, 산학협력교수 및 예체능계 지원자는 연구실적물 200%에 제한 없으며, 최근 4년 이내 발표한 개인전시, 공연, 창작 및 실기활동의 창작자료, 팜플렛,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

6. 경력증명서(지원서상의 전 경력) 1부

7. 국외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1부

8.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

9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출

제 7조(서류접수 및 심사의뢰) 교무처는 신입교원 채용 지원자의 지원서류를 접수하고, 각 심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심사를 의뢰하며, 심사결과를 정리하고 검증하는 등 단계별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심사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.

제 8조(심사절차)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서 평가를 실시하며 심사절차 및 기준은 “별표1, 별표2, 별표3에 따른다.

- 제 9조(기초심사 및 전공심사위원 위촉 및 평가) ①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은 교무처장의 제정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로 구성하며,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전공의 외부인사 1인을 포함시킨다.
- ② 기초심사의 학력 및 성적부문은 A - E 등급으로 평가하여 D등급 이하자(학사, 석사, 박사중 2개)는 불합격 처리하며, 경력사항은 10점 만점으로 한다.
- ③ 전공영역은 지원자의 전공이 채용분야에 적합한가를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로 평가하며, “가”, “부”로 판정하고, 각 사유를 기록한다. 단, 양적인 연구실적이 점수가 높더라도 “최우수”, “우수”, “보통”, “보통하” 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. 또한 심사위원 2/3의 의견을 따른다.
- ④ 연구실적심사는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실적으로 하며, 연구실적평가는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하며 3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.
- ⑤ 심사결과 상위 3배수 내외의 인원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 다만, 채용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전공에 대해서는 면접대상자 인원을 20% 내외 감축할 수 있으며, 상위 3배수의 인원이 선발되어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지원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할 경우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.

- 제 10조(면접심사위원의 위촉 및 평가) ① 면접심사는 법인 또는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들이 실시하며, 강의능력 및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가한다. 단, 오디션이 필요한 전공은 오디션이 추가될 수 있으며 오디션 심사위원은 총장이 따로 위촉한다.
- ② 면접심사는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하며 60점 만점으로 한다. 단, 면접평균점수가 만점기준 48점 미만은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.
1. 인격과 품위
 2. 교수의 역할에 대한 인식
 3. 교육자(연구자)로서의 가능성
 4. 어학능력(외국어)
 5. 강의능력
 6. 연구능력(교육 및 연구계획서 참조)
- ④ 오디션이 추가된 경우 오디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.

- 제 11조(최종선발예정자의 결정절차 및 방법) ① 최종선발 예정자는 면접심사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.
- ②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.
1. 연구업적 점수 고득점 자
 2. 연령순(연소자)

제 12조(특별채용) 삭제

제 13조(특정대학 출신자 제한)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제 14조(임용제정) 총장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임용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임용 제정한다.

제 15조(세칙변경) 이 세칙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변경하여 운영 할 수도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세칙은 2005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개정 세칙은 2006학년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개정 세칙은 2007학년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개정 세칙은 2013학년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